

소방실무경력(소방안전관리자) 안내

□ 소방안전관리(보조)자의 소방실무경력 인정 범위

-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기간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 및 겸임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

< 소방청 유권해석 >

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있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및 겸임경력에 관하여 소방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(보조자)는 선임된 기간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□ 소방안전관리(보조)자 경력증빙 제출서류

- 소방안전관리자 수첩(선·해임 기록이 있는 자격증) 사본(원본지참제시) 또는 선·해임기록이 있는 소방서 발급확인서
 - 자격증 분실 등 자격증상에 해임일자가 없는 경우, 관할 소방서에서 선임 및 해임기록 확인서 발급 받아 제출
 - 소방안전관리자로 계속 근무중이어서 해임기록이 없는 자는 관할 소방서에서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받아 제출

변경 前	변경 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소방안전관리자 수첩(선임기록이 있는 자격증) 사본 1부(원본지참제시) 또는 선임 기록이 있는 확인서• 경력(재직)증명원•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소방안전관리자 수첩(선·해임기록이 있는 자격증) 사본 1부(원본지참제시) 또는 선·해임 기록이 있는 소방서 발급 확인서